메타버스 얼라이언스 분과 통합 공개세미나

가상융합사업자를 위한 인공지능(AI) 활용 컴플라이언스 준비

윤리제도분과장

송도영 대표변호사(법무법인 비트)

doyoung.song@veat.kr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윤리제도분과 주요 활동 안내

[논의 아젠다]

- ✓ AI 관련 가상융합(메타버스) 법/제도 저작권 논의
- ☑ 자율규제 및 가상융합(메타버스) 플랫폼 우수사례 안내
- ☑ 가상융합(메타버스) 윤리원칙 및 실천윤리 활성화

고 '25년도 윤리제도분과 연간 활동 내용

구분	활동 경과
1차	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및 하위법령안 ②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2차	① 가상융합(메타버스) 자율규제 운영 현황 공유 및 현장 의견 수렴 ② 자율규제 산업계 동향 파악 및 가상융합 플랫폼 우수사례 공유
3차	① 인공지능기본법 하위법령 주요 내용 및 가상융합플랫폼 정의 ② 가상융합(메타버스) 윤리원칙(실천윤리)동향 ③ '25년도 윤리제도분과 정책 건의

윤리제도분과 구성원(총 19명)			
구분	소속	성명	직급
학계	법무법인 비트	송도영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이종관	수석전문위원
	한양대학교	선지원	교수
	창원대학교	김태오	교수
산업계	네이버제트	한기규	리드
	웅진씽크빅	김일경	상무
	애니펜	전재웅	대표
인터게	더픽트	전창대	대표
	글로브포인트	조상용	대표
	브이리스브이알	권종수	대표
연구계	한국법제연구원	정원준	연구위원
	한국인공지능 • 소프트웨어산업협회	안홍준	본부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문아람	연구위원
	저작권 위원회	김찬동	팀장
	한국소비자원	오지영	변호사
	소비자시민모임	윤 윤	사무총장
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혜경	사무관
간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병남	팀장

이혜민

과장

K-META 정책기획실

사무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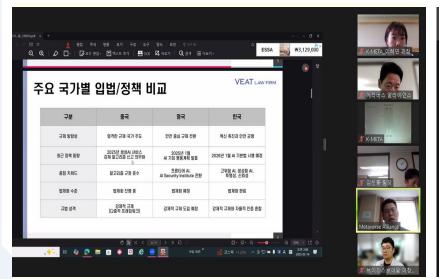
02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윤리제도 개방형 활동

1회차 개방형(5/14)



2회차 개방형(7/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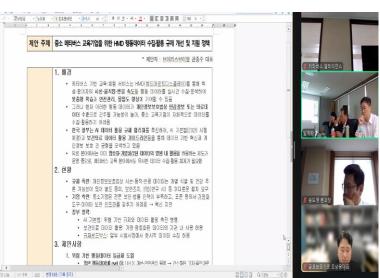






3회차 개방형(10/23)





○3 분과별 협력 사례 – 기술표준분과 연계

분과간 협력 사례 창출

- ✓ '25.11.6. 기술표준분과에서 윤리제도분과장 송도영 대표변호사가 '26.1.22. 시행예정인 '인공지능기본법 및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 발표
 - 기술표준분과에서 인공지능기본법령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여 입법기간 중 정부에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







가상융합사업자의 AI 컴플라이언스 준비를 위한

인공지능기본법 및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

○] 컴플라이언스의 시작

법령 내용 파악하기

- ✓ 인공지능기본법은 <mark>누구에게 적용되는가?</mark>
- ☑ 법령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무엇인가?
- ✓ 특히 규제 조항의 요건과 내용은 무엇인가?
- ☑ 법령을 위반한 경우 어떠한 제재를 받게 되는가?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기술

-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 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 로 구현한 것
-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 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 웨어·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



인공지능사업자

•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단체, 개 인 및 국가기관등을 말한다.

가. 인공지능개발사업자 나. 인공지능이용사업자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 2. "인공지능시스템"이란 다양한 수준의 자율성과 적응성을 가지고 주어진 목표를 위하여 실제 및 가상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추천, 결정 등의 결과물을 추론하는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을 말한다.
- 3.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 4. "고영향 인공지능"이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서 <u>다음</u> <u>각 목의 어느 하나의 <mark>영역</mark>에서 활용되는 것</u>을 말한다.
 - 가. 「에너지법」 제2조제 1호에 따른 에너지의 공급
 - 나.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 1호에 따른 <u>먹는물의 생산 공정</u>
 - 다.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 1호에 따른 <u>보건의료</u>의 <u>제공 및 이용체계</u>의 구축·운영
 - 라.「의료기기법」 제2조제 1항에 따른 <u>의료기기</u> 및 「디지털의료제품법」 제2조제2호에 따른 <u>디지털의료기기</u>의 <u>개발 및 이용</u>
 - 마.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 1 항제 1 호에 따른 핵물질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원자력시설의 안전한 관리 및 운영
 - 바. 범죄 수사나 체포 업무를 위한 생체인식정보(얼굴·지문·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생리적·행동적 특징에 관한 개인정보를 말한다)의 <u>분석·활용</u>
 - 사. 채용, 대출 심사 등 개인의 권리·의무 관계에 <mark>중대한 영향</mark>을 미치는 판단 또는 평가
 - 아.「교통안전법」 제2조제 1 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교통수단, 교통시설, 교통체계의 <mark>주요한</mark> 작동 및 운영
 - 자.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자격 확인 및 결정 또는 비용징수 <mark>등</mark>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의사결정
 - 차. 「교육기본법」 제9조제 1항에 따른 유아교육·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에서의 <u>학생 평가</u>
 - 카. 그 밖에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역으로서 <mark>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mark>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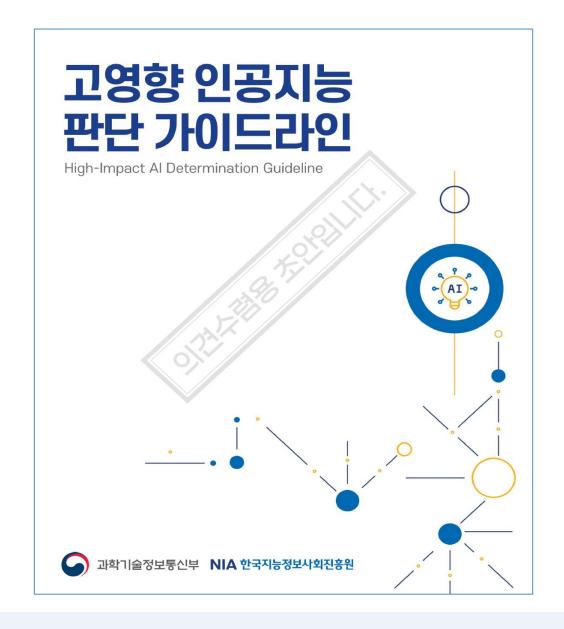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 단체ㆍ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

시행령 제2조(적용범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이란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만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발ㆍ이용되는 인공지능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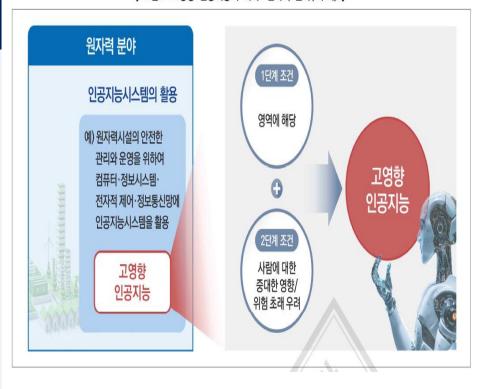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업무

- 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제15조제1항에 따른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 관리
- 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가안보를 위하여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업무
- 다.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사이버보안 예방ㆍ대응체계의 구축ㆍ운영
- 라. 「국가정보원법」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직무
- 마.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대테러 활동
- 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의 보호 및 제11조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조치
- 사. 「방첩업무 규정」 제3조에 따른 방첩업무
- 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및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조치
- 자. 「전자정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확인된 국가정보원장의 보안조치
-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업무
 - 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국방정보화사업
 - 나. 「방위사업법」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의 개발·활용·운용 등의 업무
-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업무
 - 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등의 수사 및 방지 조치 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제2조제6호에 따른 대테러활동
 - 다.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의 보호 및 제11조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사 및 방지 조치
 - 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및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사 및 조치
 - 마. 「방첩업무 규정」 제3조에 따른 방첩업무
 - 바.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제2조제5호에 따른 정보사범 등에 대한 수사 및 체포

AI기본법 하위법령집 2025.9. 본 자료집은 대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것으로, 자료집에 수록된 자료는 최종본이 아닙니다.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게 되므로 최종 확정안과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의견수렴 방식은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문의처: aiactnia@nia.or.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림1. 고영향 인공지능의 예시: 원자력 분야('마'목)]



- ✓ 사람의 권리와 이익에 대한 위험은 AI제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제공받은 이용자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자에게도 해당함
- ✓ 인공지능시스템의 영향은 긍정적, 부정적 또는 양면적일 수 있으나, 규제의 입법취지에 따라 부정적 영향에 초점을 맞춤
 - 인공지능시스템의 **의도된 목적, 기능, 활용 맥락**을 다양한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위험의 중대성은 위험에 처한 권익의 속성과 증가된 위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적절한 위험 측정 방법이나 지표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AI시스템의 목적 및 기능과 활용되는 상황의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5. "<mark>생성형 인공지능</mark>"이란 입력한 데이터(「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조와 특성을 모방하여 글, 소리, 그림, 영상, 그 밖의 다양한 결과물을 생성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을 말한다.
- 6. "<mark>인공지능산업</mark>"이란 <u>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기술을 <mark>활용한 제품</mark>(이하 "<mark>인공지능제품</mark>"이라 한다)을 개발·제조·생산 또는 유통하거나</u> 이와 <mark>관련한 서비스</mark>(이하 "<mark>인공지능서비스</mark>"라 한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 7. "인공지능사업자"란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단체, 개인 및 국가기관등을 말한다.
 - 가. 인공지능<mark>개발사업자</mark>: 인공지능을 <mark>개발하여 제공</mark>하는 자
 - 나. 인공지능<mark>이용사업자</mark>: <mark>가목의 사업자가 제공한 인공지능</mark>을 이용하여 <mark>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mark>하는 지 (≠ EU Al Act의 Deployer)
- 8. "이용자"한 <mark>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mark>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일반 '콘텐츠'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자 X)
- 9. "영향받는 자"란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에 의하여 자신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받는 자를 말한다.
- 10. **"인공지능사회"**란 인공지능을 통하여 산업·경제, 사회·문화,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
- 11. **"인공지능윤리"**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기초로 하여, 국민의 권익과 생명·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의 개발, 제공 및 이용 등 모든 영역에서 사회구성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 기준을 말한다.

인공지능 제품

✓ 제품 자체가 인공지능 관련 알고리즘을 실행하거나 인공지능시스템에 접속하여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

☑ 예시

- 휴대폰에 결합된(On-Device) AI 번역 기능을 제공하는 제품
- 노트북에 결합된(On-Device) AI로 화상회의를 지원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제품
- •자율주행자동차, AI스피커, AI로봇청소기, AI가 탑재된 웨어러블 기기 등

인공지능 서비스

- ✓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기술이 활용되어 정보 분석, 예측, 추천, 창작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것
- ☑ 예시
 - 이용자가 입력한 텍스트를 분석하여 실시간 맞춤형 영상을 생성해주는 서비스
 - 음성 분석 AI가 이용자의 말을 분석하여 외국어 발음을 교정해주는 언어 학습 서비스
 - 대화형 AI 상담서비스, AI기반 실시간 번역 서비스 등

인공지능 사업자

- ☑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법인, 단체, 개인 및 국가기관등
- ✓ 영리 목적의 민간 사업자 법인, 개인 뿐만 아니라 비영리단체 및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기관등을 포함

인공지능산업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제품("인공지능제품")을 개발·제조·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한 서비스("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사 업

일정한 목적과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경제적/사회적 활동

인공지능 사업자

- ☑ 인공지능개발사업자: 인공지능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자
- ☑ <u>인공지능이용사업자</u>: 가목의 사업자가 제공한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인공지능개발사업자

- ✓ 개발 : 인공지능을 직접 개발하거나 그성능에 중대한 영향을 줄 정도로 수정/변경/개량하는 것
- ✓ 제공: 인공지능을 개발하여 제공해야 하므로 '제공행위'가 필수적
 - 제공의 유/무상 여부는 불문
 - 오픈소스 공개와 같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것도 가능

인공지능이용사업자

- ☑ 018 : 인공지능개발사업자로부터 직접 제공받거나 다른 01용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 것도 포함
 - 중대한 기능 변경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자'
 - 개발사업자의 예측 가능성, 목적 및 용도의 변경, 시스템의 구조 및 기능 변경을 핵심요소로 고려
- ✓ 제공: 인공지능에 기반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직접 실행하는 제품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거나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비스를 이용자의 이용에 제공→ 이용자에 대한 제공행위가 필수적

인공지능 사업자

- ✓ <u>인공지능개발사업자</u>: 인공지능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자
- ☑ 인공지능이용사업자: 가목의 사업자가 제공한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가상융합 사업자

- <u>"가상융합사업자"란 가상융합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u>
 - "가상융합산업"이란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세계 관련 서비스나 기기·상품 등(이하 "가상융합서비스등"이라 한다)의 개발·제작·출시·판매·제공·임대 등(이하 "개발등"이라 한다)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 "가상융합기술"이란 이용자의 오감을 가상공간으로 확장하거나 현실공간과 혼합하여 인간과 디지털 정보 간 상호 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

- ◆ 분야별 고영향 인공지능
- 의료기기
 - ✓ '현행 '의료기기법령'상 3등급 이상부터 잠재적 위해성이 중증 이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바, 이러한 법령상 잠재적 위해성 판단 기준은 고영향 인공지능 여부 판단에도 활용될 수 있음(의료기기법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참조)
 - 1등급: 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없는 의료기기
 - 2등급: 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 (▲)
 - 3등급: 중증도의 잠재적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
 - 4등급: 고도의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

● 채용/대출심사

- √ '채용'에 활용되는 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 높음
- '대출심사' 및 이와 유사한 개인신용평가, 보험가입심사 등에 이용되는 인공지능 역시 고영향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 (→ 금융위원회의 "금융분야 AI 운영 가이드라인"도 참고 필요. 동 가이드라인에서는 ① '고위험 서비스'라는 용어 사용, ② AI 시스템의 개발.운영 등을 외부기관에 위탁시 수탁기관이 동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을 요구)

- ◆ 분야별 고영향 인공지능
- 교통수단/교통시설/교통체계
 - 1. "교통수단"이라 함은 사람이 이동하거나 화물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 가. 「도로교통법」에 의한 차마 또는 노면전차,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 의한 철도차량(도시철도를 포함한다) 또는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에 의하여 교통용으로 사용되는 용구 등 육상교통용으로 사용되는 모든 운송수단(이하 "차량"이라 한다)
 - 나. 「해사안전기본법」에 의한 선박 등 수상 또는 수중의 항행에 사용되는 모든 운송수단(이하 "선박"이라 한다)
 - 다. 「항공안전법 에 의한 항공기 등 항공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운송수단(이하 "항공기"라 한다)
 - 2. "교통시설"이라 함은 도로·철도·궤도·항만·어항·수로·공항·비행장 등 <u>교통수단의 운행·운항 또는 항행에 필요한 시설</u>과 그 시설에 부속되어 사람의 이동 또는 교통수단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행·운항 또는 항행을 보조하는 <mark>교통안전표지·교통관제시설·항행안전시설 등의 시설 또는 공작물</mark>을 말한다.
 - 3. "교통체계"라 함은 사람 또는 화물의 이동·운송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또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의 이용·관리·운영체계 또는 이와 관련된 산업 및 제도 등을 말한다.

< 운전 자동화의 단계적 구분 >

	레벨 0	레벨 1	레벨 2	레벨 3	레벨 4	레벨 5
레벨 구분						
	N.	운전자 보조 기능			자율주행 기능	
명칭	자율주행 없음 (No Automation)	운전자 지원 (Driver Assistance)	부분 자동화 (Partial Automation)	조건부 자동화 (Conditional Automation)	고도 자동화 (High Automation)	완전 자동화 (Full Automation)
자동화 항목	없음	방향조작 or 속도	방향조작 & 속도	방향조작 & 속도	방향조작 & 속도	방향조작 & 속도
운전주시	항시 필수	항시 필수	항시 필수 (운전대 상시 잡고 있 어야함)	시스템 요청시 (운전대 잡을 필요X 제어권 전환시만 필요)		전 구간 불필요
자동화 구간	, <u>-</u>	특정구간	특정구간	특정구간	특정구간	전 구간
시장 현황	대부분 완성차 양산	대부분 완성차 양산	7~8개 완성차 양산	1~2개 완성차 양산	3~4개 벤처 생산	없음

○3 제4조(적용범위)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 ② 이 법은 국방 또는 국가안보 목적으로만 개발·이용되는 인공지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인공지능,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산업 및 인공지능사회(이하 "인공지능등"이라한다)에 관하여 <u>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u>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인공지능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의 판단 기준
 - 규율 대상의 동일성과 특수성, 규율 밀도와 구체성의 정도, 입법 목적의 특수성 여부, 시간적 선후 관계 등
 - - 과학기술기보법 제3조, 지능정보화기본법 제5조
 - 정보통신융합법 제4조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7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

○3 제14조(인공지능기술의 표준화)

제14조(인공지능기술의 표준화) ① 정부는 <u>인공지능기술,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습용데이터, 인공지능</u>의 안전성·신뢰성 등과 관련된 표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인공지능기술 관련 표준의 제정 · 개정 및 폐지와 그 보급
- 2. 인공지능기술 관련 국내외 표준의 조사 · 연구개발
- 3. 그 밖에 인공지능기술 관련 표준화 사업
- ② 정부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제정된 표준을 고시하여 관련 사업자에게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 ③ 정부는 민간 부문에서 추진하는 인공지능기술 관련 표준화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정부는 인공지능기술 표준과 관련된 국제표준기구 또는 국제표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강화하여 야 한다.
- ⑤ 그 밖에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표준화 사업의 추진 및 지원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제12조(인공지능안전연구소)의 사업 중 "인공지능안전 기술 및 표준화 연구"
- 시행령안 제12조(학습용 데이터 지원대상 사업 등) 제1항 제3호에서 "법제도 연구 및 표준계약서 개발, 학습용데이터 표준.가이드 대발 등에 관한 사업

○4 제15조(학습용 데이터)

- 제15조(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관련 시책의 수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공지능의 개발·활용 등에 사용되는 데이터(이하 "학습용데이터"라 한다)의 생산·수집·관리·유통 및 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학습용데이터의 생산·수집·관리·유통 및 활용 등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③ 정부는 학습용데이터의 생산·수집·관리·유통 및 활용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양한 학습용데이터를 제작·생산하여 제공하는 사업(이하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학습용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제공·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하 "<u>통합제공시스템</u>"이라 한다)을 구축·관리하고 민간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4제15조(학습용 데이터)

(시행령안)

제12조(학습용데이터 지원대상 사업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대상사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 1. 인공지능의 개발·활용 등에 사용되는 데이터(이하 "학습용데이터"라 한다)의 생산 및 가공 기술 개발 사업
- 2. 인공지능서비스(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공지능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개발을 위한 학습용데이터의 생산・수집・관리・유통 및 활용 등에 관한 사업
- 3. 관련 법제도 연구 및 학습용데이터 활용 등에 필요한 가이드 · 표준계약서 개발 등에 관한 사업
-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추진하는 시책과의 연계성
- 2. 학습용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관리ㆍ유통 및 활용 등의 촉진에 대한 기여도
- 3. 인공지능산업에서의 데이터 활용도 제고, 인공지능산업 활성화, 창업·고용 창출 등 예상되는 경제적 파급효과
- 4. 제도적 · 기술적 실현가능성 및 관련 법령 준수 여부
- 5. 그 밖에 학습용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관리ㆍ유통 및 활용 등에 관한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의 세부 기준과 평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한다

제13조(학습용데이터 통합제공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통합제공시스템(이하 "통합제공시스템"이라한다)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축 · 관리해야 한다.

- 1. 학습용데이터의 통합 검색
- 2. 학습용데이터의 체계적 분류
- 3. 학습용데이터 출처 제공
- 4. 통합제공시스템과 국가기관등 및 민간단체 등이 운영하는 다른 데이터 플랫폼과의 연계
- 5. 학습용데이터의 가치평가 및 품질관리 관련 정보의 제공
-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공공기관(「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에게 통합제공시스템과 각 기관이 보유한 개별 시스템 및 데이터와의 연계, 통합제공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및 자료의 제출 등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 및 자료의 제출 등 협력을 요청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합제공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는 학습용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 연계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04 제15조(학습용 데이터)

검토 사항

- ✓ 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는 제15조가 직접 문제되는 것은 아님
- ☑ 그러나 "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된 사업자의 책무"(제34조)에서 인공지능사업자는 고영향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고영향 인공지능의 안전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의 인공지능이 도출한 최종결과, 인공지능의 최종결과 도출에 활용된 주요 기준, 인공지능의 개발·활용에 사용된 학습용데이터의 개요 등에 대한 설명 방안의 수립·시행 의무를 부담
- ☑ 그 외에 인공지능 학습에 할용한 저작물, 개인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데이터와 관련된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 준비 필요

○5 제30조(검·인증)

제30조(인공지능 안전성·신뢰성 검·인증등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u>단체등이 인공지능의 안전성·신뢰성</u> <u>확보를 위하여 <mark>자율적으로 추진</mark>하는 검증·인증 활동(이하 "검·인증등"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u>

- 1. 인공지능의 개발에 관한 가이드라인 보급
- 2. 검·인증등에 관한 연구의 지원
- 3. 검·인증등에 이용되는 장비 및 시스템의 구축·운영 지원
- 4. 검·인증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 5. 그 밖에 검·인증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검·인증등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등에 대하여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u> 정보를 제공하거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인공지능사업자가 고영향 인공지능을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검·인증등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u>국가기관등이 고영향 인공지능</u>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u>검·인증등을 받은 인공지능에 <mark>기반한</mark> 제품 또는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u>하여야 한다.

(시행령안) 제21조(인공지능 안전성·신뢰성 검·인증등 지원) ① 법 제30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 1. 검증·인증 활동(이하 "검·인증등"이라 한다)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의 보급
- 2. 검·인증등 관련 교육 및 컨설팅 / 3. 검·인증등의 품질 진단 및 관리
- 4. 검·인증등 관련 연구·개발 및 국제 협력 / 5. 그 밖에 검·인증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하위법령안은 향후 제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① <mark>인공지능사업자</mark>는 고영향 인공지능이나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제품 또는 서비스가 해당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운용된다는 사실을 <mark>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mark>하여야 한다.

- ② <mark>인공지능사업자</mark>는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mark>표시</mark>하여야 한다.
- ③ 인공지능사업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결과물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결과물이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결과물이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에 해당하거나 그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전시 또는 향유 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사전고지, 제2항에 따른 표시, 제3항에 따른 고지 또는 표시의 방법 및 그 예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제31조 관련 시행령안

- ① 인공지능사업자는 다음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사전고지 필요
 - 제품등에 직접 기재, 계약서, 사용설명서.이용약관 등에 기재
 - 이용자의 화면 또는 단말기 등에 표시
 - 제품등을 제공하는 장소(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의 장소 포함)에 인식하기 쉬운 방법으로 게시
 - 그 밖에 제품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과기정통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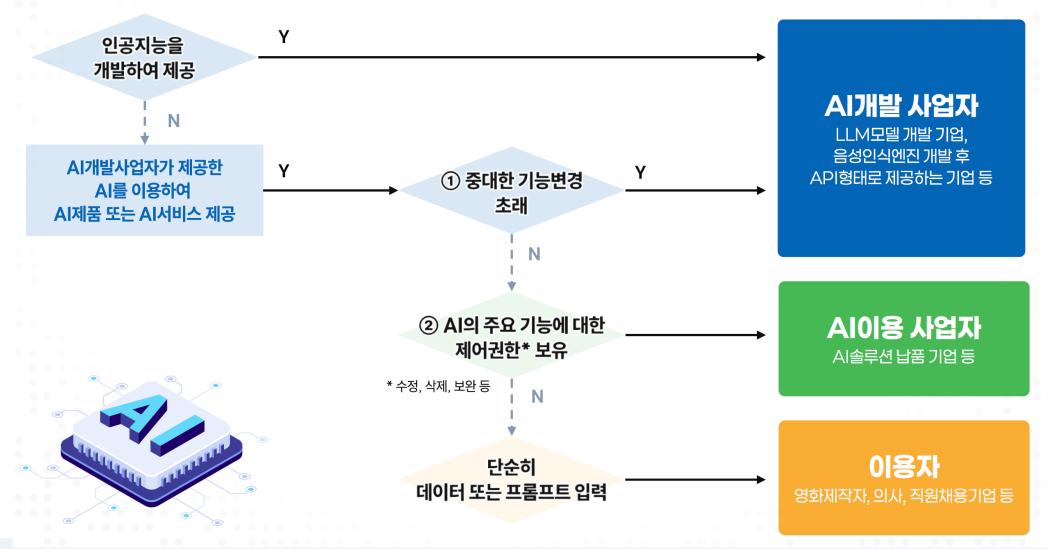


- ② **(최초 입법예고)** 인공지능사업자는 그 결과물에 <u>사람 또는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형식</u>으로 제31조 제2항에 따른 표시 가능
 - (재입법예고) 인공지능사업자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표시(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결과물이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 중 하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1.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방법
 - 2.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방법. <mark>다만, 이 경우에는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1회 이상 안내</mark>문구·음성 등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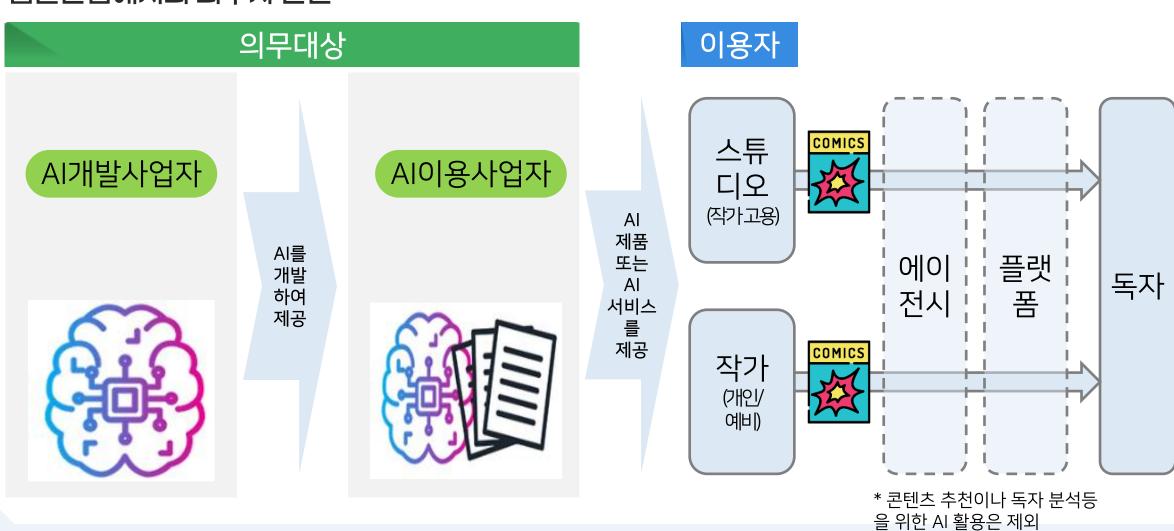
법 제31조 관련 시행령안

- ③ 법 제31조 제3항에 따른 고지나 표시는 인공지능사업자가 <u>다음의 사항을 고려</u>하여 <u>이용자</u>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
 - 이용자가 시각, 청각 등을 통하거나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하여 쉽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 주된 이용자의 연령, 신체적/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
 - ④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u>제품·서비스명, 이용자 화면이나 제품 겉면에 표시된 문구 등</u>을 고려할 때 고영향 인공지능 또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운용 사실이 <u>명백한 경우</u>
 - 2. 인공지능사업자의 <u>내부 업무 용도로만</u> 사용되는 경우
 - 3. 그 외 제품 등의 유형·특성이나 결과물의 내용, 이용형태 및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하여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적용 예외가 필요한 사항으로 <mark>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mark>하는 경우

투명성 의무자 판단 프로세스



웹툰산업에서의 의무자 판단



영화산업에서의 의무자 판단

의무대상(AI개발/이용사업자)

AI를

개발

하여

제공

AI개발사업자

* 언어, 이미지, 영상 등 제작에 사용될 수 있는 AI를 개발하여 제공



AI이용사업자

* Al개발사업자의 Al를 활용하여, <u>영화 제작에</u> 필요한 Al제품 또는 Al서 비스 제공



이용자

제작

기획·개발 <mark>(시나리오 작성)</mark>

제작

(촬영)

제품 또는 Al 서비스 를 제공

ΑI

배급

상영

소비

소

비

자

배 병호

영화 ¦ 관등 ¦

제작 후 편집 (CG,VFX 등)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



○ (전시·향유 등을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 'AI 수로부인'은 인공지능기술 활용 사실과 이용 도구를 엔딩 크레딧에 명시



- 제품 패키지에 표시하여 안내
- 회원가입 시, 서비스 이용약관 내 고지
- 서비스 온보딩 시, 서비스 이용 방법 및 AI기반 운용 안내
- 세션 연결 시, Al생성 결과물 및 오류 가능성 안내
- 캡션, 주석, 설명 추가 ➡ 실제 콘텐츠 향유 과정에서는 방해를 주지 않는 방식

○7 제32조(인공지능의 안전성 확보 의무)

제32조(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 ① 인공지능사업자는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인공지능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1. 인공지능 <mark>수명주기 전반</mark>에 걸친 위험의 식별·평가 및 완화
- 2. 인공지능 관련 안전사고를 모니터링하고 대응하는 <mark>위험관리체계</mark> 구축
- ② 인공지능사업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의 이행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의 구체적인 이행 방식 및 제2항에 따른 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시행령안 제23조

-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부동소수점 연산 이상인 인공지능시스템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공지능기술 발전 수준,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인공지능시스템
- 응용형 서비스에 대해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는 여전히 불명확
- 최근 인공지능사업자들이 AI 모델의 누적 연산량을 공개하지 않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

07 제32조(인공지능의 안전성 확보 의무)

2024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 안내서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한 위험관리 계획 및 수행

 생성 AI 모델 및 사전 학습된 생성 AI 모델로부터 도메인별 파인튜닝 모델을 활용한 서비스 에서 모델의 생성 결과가 윤리적 측면에서 서비스 이용자의 안전과 생명,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 로 위험관리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위험의 심각성과 파급효과를 사전에 인식하여 분석하고,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등 위험관리를 수행한다

* 혼동을 피하기 위해 통합하여 '생성 AI 기반 서비스'로 표기한다.

인공지능 시스템 생명주기에 걸쳐 나타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분석하였는가?

- 생성 AI 기반 서비스 개발 시 위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생성 AI 모델의 데이터 편향의 영속성, 부적절
- 또한 인공지능 관점에서 위험 요소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을 다루고 이해하기 위해 ISO/IEC 23894:2023 및 ISO/IEC 24028:2020 표준이 제공되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 NIST에서 개발한 프레임워크인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AI RMF, Risk Management Framwwork}도 참고할 수 있다

하거나 가짜인 콘텐츠 생성을 둘러싼 윤리적 딜레마, 개인정보 침해 및 보안 취약 가능성, 출력물에 대한 통제력 상실, 규제 복잡성, 의도하지 않은 사용으로 인해 예기치 못한 결과 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 ✓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는 AI 시스템 생명주기 전반에 걸쳐, 배포 여부 결정에 대한 정보 제공에 실패할 경우의 비용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것을 권고[32]
- ✓ AI 위험관리는 보안, 불평등, 악의적인 사용자의 남용, 치명적인 사고와 같은 기술적 위험과 비기술적 위험을 모두 해결하는 것을 포함하며 AI 기술 사용과 관련된 위험을 식별·평가·관리하는 프로세스
- ✓ AI RMF에 따르면, 위험은 "이벤트의 발생 가능성과 조직에 미치는 영향의 규모를 종합적으로 측정
- ✓ AI 시스템에서 위험관리는 생성 AI 기반 제품 및 서비스의 안전·보안·신뢰성을 보장하는 데 중요 [33]



AI 안전성 확보 가이드라인(안)

○7 제32조(인공지능의 안전성 확보 의무)

측정방식	장점	한계
이론적 계산식	• 간단 계산, 비용 저렴	설계 가정에 따라 오차 발생 가능연산반복횟수 등 내부 설정 필요,외부자가 알기 어려움
경험적/통계적 측정식	공개된 파라미터, 토큰수로 계산 가능	모델별 계수 편차 존재비공개 모델의 경우 부정확
GPU 사용량 기반 추정식	실제 실행량 기준, 높은정확도	실행 로그 · 자원 사용량 필요외부 제3자는 측정 한계

경험적/통계적 측정식

- 위험 점수 = (심각성 × 중대성) × (실현가능성 × 빈도) × (1/관리가능성)
 - 100점 이상: 즉시 조치 필요
 - 20-99점: 1개월 내 대응
 - 20점 미만: 정기 모니터링

07 제32조(인공지능의 안전성 확보 의무)

주 제	장 점
위험관리 체계 구축 · 운영	• [대응 조직] 각 인공지능개발 사업자의 조직 규모, 산업 분야, 기술 수준, 사업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설계될 수 있음. 그러나 조직 구성, 책임 구조, 실행 체계, 외부 협력, 지속 운영과 같은 핵심 사항들은
	위험관리의 최소 기준으로서 공통적으로 준수할 필요가 있음
	• [조직 기능] 이러한 체계는 인공지능 모델의 고유한 특성과 위험양상을 반영해, 인공지능 안전사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야 함
	• [제도 기반] 안전사고 관리체계는 제도적 기반 위에 구축되어야 함
인공지능 안전사고 모니터링	• [모니터링] 모니터링 체계는 단순히 기술적 이상을 탐지하는 수준을 넘어서, 다양한 유통경로와 사용
	환경에서의 오용 및 위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실제 사고의 징후를 조기에 식별할 수 있도
	록 설계되어야 함
및 대응	• [사고 대응] 실제 사고나 위험 징후가 식별될 경우, 조직 내에 사전 정의된 사고 대응 책임 체계에 따
	라 신속하게 대응 절차를 개시해야 함

○7 제32조(인공지능의 안전성 확보 의무)

1. 기본 정보

<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결과 제출서 예시>

가. 회사 정보

- (대상 사업자 명칭) 주식회사
- (소재지) 시 구 로
- (사업자등록번호) 123-12-12345
-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인 경우 국내대리인의 성명/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 주소)

나. 인공지능모델정보

- (복수 모델시 각 인공지능 모델 별 기재 필요)
- (대상 인공지능 모델 이름)
- (버전)
- (출시일) 1234.12.12
- (모델의파라미터수) 개
- (모델의훈련기간) 개월
- (모델훈련에사용된계산자원) FLOPs
- (계산자원측정방법및기준)
- (모델이수행하려는업무분야) 금융(생성형챗봇) 등

- (고영향인공지능여부) 미해당
- (통합될수있는인공지능시스템의종류) ChatGPT-40
- (모델의입출력형식(예. 텍스트, 이미지, 멀티모달등)) 멀티모달
- (모델의 이용 정책) 별첨
- (대상 인공지능시스템에 대한 추가 설명(자유기재))
- (설명가능성 및 책임성을 위한 노력 사항 기재)
- (장애 및 사고, 시정조치 이력)
- (성능 및 안전성 테스트 실시 결과)
- 2. 위험의 식별 · 평가 및 완화를 위한 조치 : 관련 예시는 제3장3.5 참조
- 3. 안전사고 모니터링 및 대응을 위한 위험관리체계: 관련 예시는 제4장4.4 참조
- 4. 검토자 및 승인자의 서명 및 제출일

08 제33조(고영향 인공지능의 확인)

제33조(고영향 인공지능의 확인) ① 인공지능사업자는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인공지능이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련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고영향 인공지능의 기준과 예시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보급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제 1항에 따른 확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제34조(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의 책무)

제34조(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의 책무) ① 인공지능사업자는 고영향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고영향 인공지능의 안전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조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 1. **위험관리방안**의 수립·운영
- 2. <u>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의</u> 인공지능이 도출한 최종결과, 인공지능의 최종결과 도출에 활용된 <u>주요 기준</u>, <u>인공지능의 개발·활용에 사용된 학습용데이터의 <mark>개요</mark> 등에 대한 <mark>설명 방안</mark>의 수립·시행</u>
- 3. 이용자 보호 방안의 수립·운영
- 4.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mark>사람의 관리·감독</mark>
- 5.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mark>문서의 작성과 보관</mark>
- 6. 그 밖에 고영향 인공지능의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mark>고시</mark>하고,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③ 인공지능사업자가 <u>다른 법령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준하는 조치</u>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09 제34조(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의 책무)

시행령안 제26조

- ①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고 <mark>그 근거를 문서로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mark>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사업장 또는 인공지능사업자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u>다만, 「부정경쟁방지</u>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 1. 위험관리정책 및 조직체계 등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관리방안의 주요 내용
 - 2.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설명 방안의 주요 내용◄
 - 3. 법 제34조제 1항제3호에 따른 이용자 보호 방안
 - 4. 해당 고영향 인공지능을 관리·감독하는 사람의 성명 및 연락처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의 인공지능이 도출한 최종결과, 인공지능의 최종결과 도출에 활용된 주요 기준,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에 사용된 학습용데이터의 개요 등에 대한 설명 방안의 수립ㆍ시행

- ③ <mark>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의 조치를 모두 또는 일부 이행한 인공지능시스템을 제공받은 인공지능이용사업자가 인공지능시스템의 중대한 기능 변경을 초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mark>.
- ④ 인공지능이용사업자는 인공지능개발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인공지능개발사업자는 이에 <mark>협력하도록 노력</mark>하여야 한다.
- ⑤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인공지능사업자가 <mark>별표 1에 따른 조치를 해당 법령에 따라 이행</mark>한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u>이행한 것으로 본다</u>.
 -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6조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사회적 영향평가"
 - *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공공기관은 필수. 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는 적극 노력)

1 제35조(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

- 제35조(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 ① 인공지능사업자가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사람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기관등이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영향평가를 실시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③ 그 밖에 영향평가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안 제27조

- 인공지능 영향평가시 고려 사항
 - 1. 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영향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식별(일정한 특성을 가진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식별을 말한다)
 - 2.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본권 유형의 식별
 - 3. 발생할 수 있는 사람의 기본권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영향의 내용 및 범위
 - 4. 해당 고영향 인공지능의 사용 행태
 - 5. 영향평가에서 활용한 정량적 또는 정성적 평가지표 및 결과산출 방식
 - 6. 해당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인한 위험의 예방·완화·손실 복구 등에 관한 사항
 - 7. 영향평가의 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이행 계획에 관한 사항
- 인공지능사업자는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영향평가를 실시 할 수 있음

]] 제36조(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36조(국내대리인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인공지능사업자로서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고,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제32조제2항에 따른 이행 결과의 제출
- 2. 제33조제1항에 따른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 확인의 요청
- 3. 제3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성ㆍ신뢰성 확보 조치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같은 항 제5호에 따른 문서의 최신성ㆍ 정확성에 대한 점검을 포함한다)
-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 ③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인공지능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 시행령안 제28조(국내대리인 지정 사업자의 기준) ① 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공지능사업자를 말한다.
 - 1.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인공지능사업자
 - 2. <u>인공지능서비스 부문</u>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u>매출액이 100억원 이상</u>인 인공지능사업자
 - 3. <u>전년도 말 기준</u> 해당 인공지능사업자의 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에 대한 <u>직전 3개월 간</u> <u>국내 이용자 수</u>가 1일 평균 100만명 이상인 인공지능사업자
 - 4. 이 법을 위반하여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의 <u>안전성을 현저히 해치는 사건·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u>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관계 물품·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받은 자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매출액은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u>평균환율</u>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2 제40조(사실조사) 및 제43조(과태료)

제40조(사실조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공지능사업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1. <u>제31조제2항·제3항, 제32조제1항·제2항 또는 제34조제1항</u>에 <u>위반되는 사</u> <u>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u> 된 경우
- 2. 제31조제2항 · 제3항, 제32조제1항 · 제2항 또는 제34조제1항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공지능사업자의 사무소·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의 내용·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u>「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u>.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u>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u> 인공지능사업자가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인공지능사업자에게 <u>해당 위반행위의 중지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u>할 수 있다.

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u>3천만원 이하의 과</u> 태료를 부과한다.

- 1.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지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2.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 3. <u>제40조제3항에 따른 **중지명령이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u>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관이 부과 · 징수한다.

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 ① 인공지능사업자는 고영향 인공지능이나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제품 또는 서비스가 해당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 ② 인공지능사업자는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③ 인공지능사업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결과물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결과물이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되었다 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결과물이 예술적ㆍ창의적 표현물에 해당하거나 그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전시 또는 향유 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할 수 있다.

제32조(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

- ① 인공지능사업자는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인공지능시 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1. 인공지능 수명주기 전반에 걸친 위험의 식별ㆍ평가 및 완화
 - 2. 인공지능 관련 안전사고를 모니터링하고 대응하는 위험관리체계 구축
- ② 인공지능사업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의 이행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의 책무)

- ① 인공지능사업자는 고영향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ㆍ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고영향 인공지능의 안전성ㆍ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조치를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 1. 위험관리방안의 수립·운영
 - 2.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의 인공지능이 도출한 최종결과, 인공지능의 최종결과 도출에 활용된 주요 기준, 인공지능의 개발·활용에 사용된 학습용데이터의 개요 등에 대한 설명 방안의 수립·시행
 - 3. 이용자 보호 방안의 수립 · 운영
 - 4.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사람의 관리 · 감독
 - 5. 안전성 · 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의 작성과 보관
 - 6. 그 밖에 고영향 인공지능의 안전성 ·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된 사항

감사합니다.